기흥골프장이 주는 敎訓

최 인 철 (강원도 경우회장)

국가를 위해 충성을 바친 경우회원들에게는 나라의 안보가 요즘처럼 중요하게 느껴지기는 해방 전·후의 상황이래 처음일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에게 있어 건강 또한 나라의 안보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건강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특히, 현직을 퇴임한 경우들은 인생의 황금시대를 경찰이란 테두리 안에서 기쁨과 괴로움을 함께 나눈 탓에 사회에서도 호흡이 맞는 선·후배, 동료들끼리 어울려 동고동락 하다가 꺼져가는 불빛처럼 하나, 둘 세상을 하직하는 이들을 볼 때 마다 인생의 무상함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 경우들이 산악회, 테니스회, 문예회, 기우회 등 다양한 취미로 여가를 선용하며 저녁노을 붉게 물 들어가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건강관리에 힘써 살아가는 이유는 몸과 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좋은 삶을 바라는 현대인의 욕구, 즉 "웰빙"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며 그 여가활동의 하나가 서울, 경기를 중심한 무궁화회(기흥C.C.에서 월1회 골프) 골프 모임이다.

그러나 아직도 비 골프회원들의 골프에 대한 시각은 호화스런 스포츠라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으며, 무궁화회 골프비용이 경우회에 배분되어야 할 이익에서 탕감되는 형식이라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많다.

지난 날 중앙 경우회가 소유권을 둘러싸고 8년 동안이나 힘겨운 소송을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었으며, 그 당시 경우회가 하마터면 소유권을 빼앗길 뻔한 위기상황에서 극적인 화해로 공동소유권을 갖게 되었지만 이익배분은 50:50 이나 경영권은 상대측이라는 불평등한 협상이 불씨가 될 줄이야 !

소송에 얽힌 비화를 들어 보면 선배, 원로님들의 그 벙어리 냉가슴 앓은 듯한 고뇌를 어느 누가 헤아려 위로할 수 있겠는가?

다행히 이번에 기흥골프장에 관한 불평등 계약의 본격적인 재협상 논의를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 제1차 경우회 이사회의시 구홍일 중앙회장 주관하에 50%의 이익배당을 받기로 결의하였으며, 재차 3월 21일 오전 11시 신당동 경우회 소회의실에서 무궁화회 운영위원들과 경우회장단 등 15명 정도가 기흥골프장 향후 사용문제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필자도 비골프회원의 대변자로 참석하였고, 열띤 토론후 검토가 이뤄진 결과 기득권을 반환하고 재협상에 힘을 합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기히 법률검토를 거쳐 재협상하여야 할 것을 이제라도 실행에 옮긴다니 기쁘기 그지 없지만 선·후배간 관행적인 친교의 만남이라는 기존수혜를 시샘한 것 같아 미안한 감도 없지 않다.

그 동안 많은 회원들이 골프를 통해 건강관리를 하면서 회원 상호간 친교의 장을 통해

경우회 활성화를 위하는 길에 미래지향적,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며 여론 메이커로서 견인차적 역할을 하였고, 또한 기흥 골프장에서 배분되는 이익은 전국 경우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대등한 동업자 관계가 재정립되면 상호 대립관계에서 보완관계로 발전되길 바라며, 우리측 공동대표 외에 약간 명을 배치하여 경영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후 기존회원에 대한 새로운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경우회라는 거대한 조직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동목표 앞에 선·후배, 동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단결된 모습을 보여 구홍일 회장 체제에 마음을 비워 힘을 실어준 모든 경우들의 결단이 바로 경찰정신이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청신호이기에 이제 대한민국 경우회는 어둠을 뚫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른 것"이란 말처럼 캄캄한 동굴 안에서 어둠을 탓하기 전에 한개비 성냥불을 켤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하며, 경영마인드로 무장해 수익사업쪽으로도 눈을 돌려 조직의 활성화를 기할 줄 아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名士칼럼

公權力 無力化를 부추기는 政治勢力

南 時 旭
(언론인 · 세종대 석좌교수)

지난 3월 20일 인천 국제공항 로비에서 벌어진 좌우파 단체 회원들 간의 실랑이는 국법질서의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이날 시비가 벌어지게 된 것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통일연대 등 반미친북단체 회원들이 이틀 후인 22일부터 23일까지 유럽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규탄국제행사를 반대하기 위해 출국하는 것을 자유넷,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공항에 나가 항의하면서 일어났다. 양파 간의 실랑이는 다행히 큰 충돌 없이 가벼운 몸싸움으로 끝이 났지만, 이렇게 된 데는 공항 경찰이 이들의 싸움을 말렸기 때문이라 한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을 받은 한총련이 아직도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려니와 이제는 해외원정까지 하면서 당당하게 친북활동을 벌여도 괜찮은 세상이 되고 말았다.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데도 사실상 이것이 사문화되고 말았으므로 법은 있으나 마나 한 상황이다. 공항 경찰이 이날의 몸싸움을 말린 것은 이들 좌파단체 회원들이 일단 합법적으로 수속을 밟고 출국하는 이상 불상사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는 하나 근본을 따져보면 엄연히 살아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실제로는 사문화되어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빚어진 한 토막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유럽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두 종류의 중요한 북한 인권관련 행사가 열렸다. 그 하나는 미국의 프리덤하우스 주최로 국제 인권관련 민간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워싱턴과 서울에 이어서 열린 제3차 북한인권국제대회였고, 다른 하나는 유럽연합의 기구인 유럽의회가 처음 개최한 북한인권청문회였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이를 추종하는 국내 친북세력들은 미국이 인권을 앞세워 북한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이다. 국제사회의 동정은 커녕 오히려 비웃음을 살 뿐이다. 유엔의 인권선언에서도 명시되어있는 인간의 기본권은 어느 나라건 존중해야 할 인류보편의 가치여서 이를 유린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 한총련은 이들의 출국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유럽 원정대 30여명을 모집했다. 한총련은 원정대를 모집하면서 북한의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 본부가 보내온 문서를 각 대학에 '교양자료'로 배포했는데, 그 과정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북측은 이 문서에서 "우리에게는 탈북자가 있을 수 없다. 유괴자들에게 속아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운명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이 문서에 대해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소위 북 인권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은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자유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 정부가 출범 초에 착수한 것이 국가보안법 철폐와 한총련 도피자들의 수배해제 문제였다. 워낙 반대여론이 강해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지 못했지만 그 대신 정부가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을 기피함으로써 이들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은 셈이다.

국법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반국가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민주화유공자 결정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예가 폭력혁명으로 남한을 적화하려던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 사건이다. 다 같이 유신독재를 반대했다 하더라도 남한 적화운동은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투쟁이 아니라 공산혁명운동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들을 민주화투사라고 규정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국시가 흔들리게 된다.

뿐만이 아니다. 김대중정부 이래 좌파 운동권은 웬만한 불법시위를 해도 정권의 비호를 받는다는 우려가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일반화되고 있다. 최근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들이 청와대와 통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그는 월간지 〈신동아〉 4월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운동권이 야당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청와대와 바로 통해 경찰이 난감했다"고 털어놓았다. 그에 의하면 김대중 정권 당시 미군장갑차의 교통사고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때는 시위를 계속 부추기는 주동자들을 경찰이 체포하자 대다수의 대통령비서관들이 당시 치안비서관이던 자신에게 "빨리 풀어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결국 집권층 스스로가 불법을 방치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입만 열면 개혁, 개혁 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혁은 국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구상에 "다케시마"는 없다

- 독도는 엄연한 대한민국 영토 -

이 영 조 (前 총경)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중가요가 나올 정도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예민하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90Km 일본 오끼제도 북서쪽 86해리에 위치한 화산섬으로서 동도와 서도를 주섬으로 하고 그 주위에 32개의 돌섬과 암초로 구성된 소군도이다.

현재 행정소속은 경상북도 울릉도 남면 도동산 63번지 서도와 67번지 동도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시네마현 죽도(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독도는 한국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어 군사전략적으로 조기경보의 가치가 있고 한·일간 해상경계선 확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저자원의 소유권 관계로 양국간 분쟁의 도서로 되어 있다.

역사적 분쟁경과를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서기 512년) 어사부를 시켜 정복하였다」고 삼국사기(1145년 간행)에 기록된 우리나라의 고유한 영토이다. 그런데 한·일간 최대현안이자 잠재적 영유권 분쟁이 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제 2차대전의 일본 패전으로 전승국인 연합국이 일본의 침략영토를 처리하던 과정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 사령부 훈령 677호에는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 독도는 일본의 관할범위로부터 제외할 것을 분명히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1951년 9월 8일 선포된 전승국 연합국과 일본과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영토표기 지역 가운데 상기도서를 포함하였으나 유독 독도만은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이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한·일간의 논쟁의 불씨를 남겨 놓게 된 것이다.

1952년 1월 18일 한국은 인접해역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이승만 라인 : 평화선)을 통해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천명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일본은 1952년 1월 28일 외무부로 구술서를 통해 한국의 평화선에 항의한 바 있다. 1954년 한·일 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항의를 교환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독도 및 근해 침범사례를 보면 1952년 평화선 선포이래 1953년 독도에 무단상륙하여 위령비를 파괴한 것을 비롯하여, 1954년 8월과 1955년 9월에 일본 순시선과 독도의용수비대간의 총격전, 1959년 9월 일본 극우단체 돌격대의 독도 상륙 기도가 있었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총 465회에 걸쳐 일본순시선 항공기 및 어선들이 독도근해에 출현하였고 그 중 23회는 영해를 직접 침범한 바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명분축적 목적으로 독도 영유권관련 발언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주요사례를 들면 67년 3월 30일 사또수상이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최초로 독도 귀속문제를 들고 나온 이래 96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의 수상 또는 외무부 관료가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97년 11월 6일 한국이 독도 접안시설(부두)준공한데 대하여 항의와 함께 철거를 주장한 바 있는데 논쟁의 쟁점은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1. 역사적 근원 문제성 2. 지리적 접근성 3. 선점의 합법성

4. 2차대전후 영토처리 과정을 들 수 있다.

여하튼 독도는 한·일 영유권 분쟁의 뜨거운 불씨임에 틀림없다. 만일 미국이라는 힘의 장치가 없다면 가장 먼저 터져 나올 것이 독도문제가 분명할 진데, 한국은 이에 대응할 대책과 충분한 전략수립을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웰컴투 동막골'과 '天軍'

- 대중문화 생산자는 국민정서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야 -

황 철 주 (서울강동경우회)

지난 2002년 효선, 미선 두 여중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일부 종교인 등이 주동이 되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와 함께 미국의 성조기를 불태우는 과격한 집회를 개최한 이후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국이 진정한 우방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미 양국간의 미묘한 상황에서 일부 대중문화 예술인들마저 반미감정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는 느낌이다.

'웰컴투 동막골'과 '천군(天軍)'도 그러한 종류의 영화란 생각이 든다. '웰컴투 동막골'의 작품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군 소위와 또 하나의 사병, 북한군 장교와 사병이 섞인 수명의 패잔병, 비행기에서 추락해 들어온 미군 한 사람 등이 '동막골'이라는 산간마을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지내게 된다.

어느 날 이 미군을 구출하기 위해 낙하산에서 투하된 일단의 미군들이 들이닥치자, 한국군 도망병들과 북한군 패잔병들이 합세하여 미군들을 제압, 무기를 빼앗고 감금하기도 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미공군 B29의 폭격을 양민학살을 겨냥한 것으로 묘사하고, 한국군 도망병들과 북한군 패잔병들은 B29를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극렬하게 대항하다가 최후를 맞는데, 6.25전쟁은 북한의 선공으로 시작하여 수백만 명이 희생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군과 북한군이 연합하여 미군과 싸운 전쟁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해괴하게 묘사하고 있다.

영화 '천군(天軍)'은 성웅 이순신 장군을 희화화(戱畵化)하고, 한국군과 북한군의 연합군이 편성되어 활동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기 2005년 10월 21일, 압록강 유역에서 핵무기를 놓고 무장한 채 대치중이던 한국군과 북한군 연합군 7명의 군인들이 거친 돌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430여년의 시공(時空)을 거슬러 올라가 1572년의 조선시대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을 당시 사람이 천군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 무렵 이순신 장군이 1차 무과시험에 낙방하였다가 4년후 2차 시험에 합격하는데, 그 1·2차 무과시험 사이의 4년 동안에 이순신 장군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음을 기화로 상상력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도둑질하고 사기치면서 돌아 다니는 건달로 묘사한다.

한국군과 북한군 병사들이 이순신 장군을 도둑으로 몰아 관가에 신고하여 형틀에 붙잡아 매게 하는 등 곤욕을 치르게 하기도 하고, 한국군 소령이라는 자는 이순신 장군을 무과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순신 장군에게 '자네'라는 하대의 호칭을 사용하여 인격을 모독한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살린 이순신 장군, 그래서 가장 훌륭한 역사적 인물로 존경받는 위인을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이렇듯 형편없는 시중잡배로 묘사하고, '진짜 조선의 영웅은 김일성'이라고 하는 대사가 나오는 이 황당한 영화의 제작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관객에 영합한 상업주의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속에는 한반도에서의 정통성(正統性)을 북한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앞으로는 광화문 앞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우자고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와 같이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대중문화가 국민정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빚에서 완전 해방! 개인회생과 파산!

★ 그 동안 IMF 등 경기변동이나 지인들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빚을 갚지 못한 불운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지긋지긋한 빚 독촉으로 절망에 빠졌으나, 퇴직금 때문에 월불입금이 많아 개인회생신청을 주저하셨습니까?

★ 이전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신청으로 많은 퇴직금이 남아 있어 주저하셨던 분들을 위하여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부담없는 월 불입금을 지불하고 지긋지긋한 빚 독촉과 급여압류(차압) 및 채권사의 법적조치에서 벗어나 희망찬 삶을 다시 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희 이신영 법률사무소는 그 동안 개인회생파산면책의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습득한 수많은 법률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심성의를 다하여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031)211-2825

★ 각종 은행 · 보험회사 · 캐피탈 대출, 신용카드 대금, 개인간의 채무(사채)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 바로 연락 주셔요.
☎(031)211-2825

☆ 파산면책제도 ⇒ 채무상환능력 전혀 없으신 분 완전 탕감.

★★★ 공무원, 비공무원, 연금고소득자, 워크아웃-배드뱅크신청자, 기타

* 이혼 등 가사 사건, 손해배상, 부동산, 행정형사관련 각종 법적분쟁 무료상담

법 률 사 무 소

무료상담전화 : (031)211-2825. 02)535-5217

경우신문 구독문의 02-2234-1881